www.moleg.go.kr KOR 법 제 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6년 1월 현재 서술형 27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97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 (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

Q 예정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받을 수 있다면, 출산 후 양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출산 후 아동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서비스까지 연계해 드립니다.

위기임산부 상담 서비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출산·양육 및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은 대면상담으로 하되, 대면상담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상담 및 온라인상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모든 상담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각 지역별 "지역상담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사업소개-위기임산부 지원-지역상담기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정 양육을 위한 제도 및 지원 안내

위기임신부 상담에서는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법 제 처
www.moleg.go.kr

•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다음의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복지 자금의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지원 연계, 가족지원서비스, 건강관리 등 지원,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및 시설 이용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지원 및 임신·출산 진료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모성 및 영유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각종 지원 사항

•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관련 지원 사항

• 양육 및 친권의 포기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음의 보호조치(「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호출산

Q 홀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임산부입니다. 병원에서 검진도 받고 출산 준비도 하고 싶은데, 나중에 출산 관련 의료기록을 누군가 알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제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보호출산을 신청해 보세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임산부에게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이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신원 노출 걱정 없이 산전 검진 및 출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출산

"보호출산"이란 위기임산부가 위기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상담을 모두 마치고 보호출산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위기임신 상담과 보호출산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는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전단).

위기임산부 정보의 비식별화

"비식별화"란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 후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임시로 부여한 전산관리번호로서,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입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

비식별화된 정보를 이용해 산전 검진 및 출산하기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기재된 임산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위기임산부는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대신 임산부확인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3항).

해당 의료기관은 위기임산부에게 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

보호출산

Q 보호출산 후 출생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생모의 신원이 드러날 위험은 없는지 걱정됩니다.

A 보호출산 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과 관계 기관 간 통보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호출산을 한 생모의 신원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처리되며,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절대 공개되거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출생정보의 기재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보호출산을 통해 아동이 출생한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위기임산부의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에 기재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규칙」 제2조제1항).

- 아동의 생모에 관한 비식별화된 가명 및 관리번호
- 아동의 성별, 수(數) 및 출생 연월일시
- 아동의 출생 순서
-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출생정보 통보 절차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전단).

위의 통보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와 아동의 성명을 포함한 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위기임산부는 출산사실과 출생정보를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이를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즉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해당 출생정보를 포함한 출생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 전단).

법 제 처
www.moleg.go.kr

성·본의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출생사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6항 전단).

보호출산

Q 보호출산으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출산 직후 바로 아이와 분리되나요? 그리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어떤 보호조치를 받게 되나요?

A 아니요, 출산 직후 바로 아이와 헤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라 최소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없다고 결정했다면 아이는 관할 시·군·구에 인도되며, 가정위탁보호, 아동복지시설 입소,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숙려기간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아동을 보호출산한 날부터 7일 이상 그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부터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등 아동에 대한 긴급한 인도 및 보호가 즉시 필요하다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이 지나기 전이라도 아동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아동의 인도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부터 보호출산 신청을 접수한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그 지역상담기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해줄 것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전단).

보호출산 아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도된 때부터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정지되며,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인도 후 보호조치

보호출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전단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출산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출산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 보호출산 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법 제 처
www.moleg.go.kr

보호출산

Q 유전성 질병 치료를 위해 가족력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경우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보호출산 시 작성된 출생증서에는 생부모의 유전적 질환 등 건강 관련 사항이 기록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증서 작성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을 한 위기임산부에 대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 생모 및 생부의 성명·본·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내국인에 한정)
- 생모 및 생부의 유전적 질환 및 그 밖의 건강상태
- 생모가 아동의 성명을 지어준 경우에는 그 성명
- 생모가 보호출산 신청에 따른 아동보호를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 내용
- 생모 및 생부의 주소, 연락처 및 국적
- 생모 및 생부의 거주지역(시·군·구의 명칭을 말함)
- 보호출산 신청 시 생모 또는 생부의 나이 및 신청일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생증서 공개청구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의 출생증서 공개를 문서 또는 구두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단서).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생모 및 생부의 동의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출생증서를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전단).

출생증서 공개 동의

출생증서 공개의 동의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생모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전단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생모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생모 또는 생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생모 또는 생부의 인적사항이 제외된 출생증서가 공개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 단서).

- 다만, 생모 또는 생부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에게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가 공개됩니다(「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3항 및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키워드 보호출산, 위기임신, 위기임산부, 상담, 지역상담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가족관계등록부, 산전검진, 출산, 양육, 출생신고 출생증서, 출생증서 공개청구, 비식별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가명처리, 숙려기간, 입양 연계